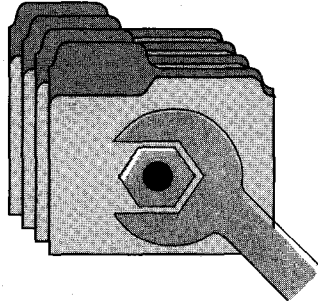


일본의 제조물책임 사례



가스보일러 관련 제조물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
생가능한 상황을 예견하여 그에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A(1963년 4월 14일생)는, 平成4년 3월 1일, Y가 소유하고 있는 삿포로시 기타구 소재의 아파트 1층 7호실을 임차한 자로서, 1972년 4월 3일 오후 8시 무렵, 목욕탕에 끓는 물을 넣기 위해, 거실 내에 설치된 파로마 가스온수기(강제배기형·품명 PH-101F)를 사용한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실내에 축만하여, 상기일시 무렵,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 사고 사망자인 A의 상속인들이, 가스기구(온수기) (제조) 판매자, 가스 판매 (점점)업자, 가스기구 설치(점점)업자 및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이다.

2. 손해배상 청구 내용

(1) 제 1심 피고들은, 제 1심 원고 승계인 X1에 대해, 각자 4392만 8891엔 및 이에 대한 1992년(平成4년) 4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제 1심 피고들은, 제 1심 원고 승계인 X2에 대해, 각자 1464만 2964엔 및 이에 대한 1992년(平成4년) 4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3) 제 1심 피고들은, 제 1심

원고 승계인 X3에 대해, 각자 1464만 2964엔 및 이에 대한 1992년(平成4년) 4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4) 제 1심 피고들은, 제 1심 원고 승계인 X4에 대해, 각자 1464만 2963엔 및 이에 대한 1992년(平成4년) 4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3. 피고인들에게 추궁한 책임내용

(1) 제 1심 피고 파로마 (가) 본건 온수기에는, 다음의 하자 있었다

a. 본건 온수기는, 제어기판의 댄납부 부분에, 댄납균열이 발생해 있었기 때문에, 점화해도 강제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b. 그리고 본래, 강제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인 가스통로를 차단하는 장치(배기 오버플로우 방지장치)가 작동해, 연소가 정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던 바. 본건 온수기의 제어기판에는 추가배선에 의한 개조가 되어 있어 안전장치가 기능하지 않고 점화 연소가 계속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나) 제 1심 피고 파로마는, 본건 온수기인 파로마PH-101 F형 가스온수기(이하, 동형의 가스온수기를 「본건 제품」 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던 것인데,

① 본건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에는, 그 안전성을 확보해, 결함·하자가 없는 상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

② 본건 제품의 설치자나 시공자에 대해서, 설치 후의 보수 점검의 방법, 상품의 교환시기, 고장시의 수리방법, 수리하는 경우의 주의점 등을 상세하게 설

명해야 할 의무,

③ 상품의 결함·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자를 통해서,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기 하자가 있는 본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본건 제품의 설치자나 시공자에 대해서 보수 점검의 주의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혹은, 사고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

(다) 만일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본건 온수기를 제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본건 온수기에는, 제 1심 피고 파로마의 명칭이 붙어 있어 취급설명서나 공사 설명서에도,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제조한 것이라고 소비자에게는 이해되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 1심 피고 파로마는, 신의칙상, 본건 온수기가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제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적어도, 제조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다.

(라) 제 1심 피고 파로마는, 가스기구라는, 그 고장이 바로 인명의 위험을 부를 개연성의 높은 위험물을 취급해 독점적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며, 그 사회적 책임은 지극히 무거운 것이다. 더욱이, 본건 사고 이전에 동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던 것에서, 본건 온수기의 컨트롤박스의 단자에 댄납균열이 생겨 연소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본건 온수기 취급업자가 응급조치로서 추가배선에 의한 개조방법으로 안전장치가 기능하는 일 없이 점화 연소가 계속하도록 수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수리방법에 대해 동취급업자에 대해서 통지, 철저히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해태하였다.

(2) 제 1심 피고 호쿠넨

(가)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프로판가스 공급업자로서 프로판가스 및 가스기구에 대해 전문적이고도 고도의 지식 및 정보를 독점하고, 본건 온수기의 보수점검을 하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기구의 불완전 연소 등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배기장치가 연소 중에 정지하는 것이 없는가, 정지했



을 경우에는 배기오버플로우 방지장치가 작동하는가 등,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제 1심 피고 Y로부터 본건 온수기의 설치, 보수, 점검을 의뢰받고 있으면서, 본건 온수기의 부품교환을 권하는 일없이, 본건 온수기의 전기 하자를 놓치거나, 혹은, 전기 하자를 만들어 낸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했다.

(나)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그 종업원이 적절한 점검·수리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다.

(3) 제 1심 피고 호쿠에이등

(가) 제 1심 피고 호쿠에이등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한 급탕설비를 일반소비자 집에 설치하고, 이를 보수·점검·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온수기를 설치했을 때에, 전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발견해 본건 온수기의 사용을 금지시키든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일으

키게 했다.

(나) 제 1심 피고 호쿠에이등은, 종업원이 적절한 점검·수리를 하지 않았던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본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

(4) 제 1심 피고 Y

(가) 제 1심 피고 Y는,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 겸 본건 거실의 임대인이므로, 임차인의 임차가옥 내에서의 생명·신체·건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제 1심 피고 Y는, 상기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고, 본건 온수기의 부품교환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수용 부품의 보존기간인 7년간의 2배 가까운 14년간이나 노후화한 본건 온수기를 계속 설치한 것 외에,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건 온수기의 보수 점검·수리를 실시하여, 가스누출장치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해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했다.

(다) 만일 제 1심 피고 Y가 본건 온수기의 보수점검을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맡기고 있었다고 하여도, 제 1심 피고 Y는, 임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스기구의 보수 점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 1심 피고 호쿠넨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것이고, 그 고의 과실은 제 1심 피고 Y의 고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

(라) A는, 본건 거실에 입주한 직후부터, 두통이 나서, 그 원인이 가스기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제 1심 피고 Y에 대해, 가스기구를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 1심 피고 Y는, 그 점검을 하지 않았다.

(마) 제 1심 피고 Y는, 임대차 계약에 기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민법 제709조 또는 동법 제717조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 피해자가 입은 손해 (손해배상 청구액)

(1) A는, 본건 사고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함께 7985만7782엔의 손해를 입었다.

(가) 장례비용 130만엔

(나) 일실이익 5555만 7782엔
 사망시의 연수입 544만1400엔(平成4년도 남자노동자 대학 전학력계 임금 센서스(census)에 의한다) A는, 사망 당시, 28세에 미츠이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삿포로 파크호텔에 근무하여, 연수입 388만 606엔을 받고 있었다. 동사는, 도내와 우량기업이며, 정기승급 등도 확실했기 때문에, 임금센서스(Census) 정도의 연수입을 받는 것은 확실했다.

활동연수: 39년간(67세까지)
 중간이자 공제 라이프니츠 계수: 17 · 017

생활비 공제: 40퍼센트

(다) 위자료 2300만엔

A는, 본건 사고시, 건강한 남성이며, 가까운 장래에 B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건 사고에 의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인생을 마감한 원통함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그 고통을 위자하려면, 2300만엔이 상당하다.

(2) 상속

A의 법정상속인은, 부친의 제 1심 원고 C와 친자식인 D이

지만, D는 상속을 포기했다. 그 때문에, 제 1심 원고 C가 단독으로 상속했는데, 동인은, 1999년(平成11년) 11월 16일 사망해, 그 아내인 제 1심 원고 승계인 X1, 아이인 제 1심 원고 승계인 X2(장녀), 동 X3(둘째 딸) 및 X4(장남)가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했다.

(3) 변호사 비용

제 1심 원고 승계인 등은, 동 대리인 등에 본건 소송의 수행을 위임했다. 그 비용은, 800만엔이 상당하다.

(4) 손해 종합계

8785만 7782엔

5. 법원의 판단

(1) 제 1심 피고 파로마

(가)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은,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본건 온수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본건 온수기는 파로마공업이 제조한 것이며, 제 1심 피고 파로마는 이것을 판매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 1심 피고 파로마에 대한 본건 온수기의 제조물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도, 당해 상품에 하자(결함)가 있는 경우에, 판매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바이다.

거기서 본건 온수기에 대해, 제품으로서의 하자(결함)의 유무를 검토하는데, 우선, 본건 온수기가 출하·판매된 당시에, 그 컨트롤박스의 제어기관에 점납균열이 발생되어 있던 것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또, 그후, 경년사용에 의해 제어기관에 점납균열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온도변화가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증언), 그것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본건 온수기에 사용된 점납이 통상의 가스기구에 사용되는 것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든가, 온수기에는 통상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점납을 사용해야 했다는가 하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또 원래, 본건 온수기는, 강제 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배기오버플로우 방지장치에 의해 연소가 정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건 온수기의 점납부 부분에 점납균열이 생긴 것을 가지고, 본건 온수기의 판



매시의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 본건 개조에 의한 추가배선에 의해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일없이 점화 연소하게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원래 판매 당시에 추가배선이 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추가배선이 시공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배선이 된 것을 가지고, 본건 온수기의 판매 당시의 하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하자가 있는 온수기를 판매한 것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 (또 이러한 것들을 하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준한 책임(청구원인(3)가(다))의 유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은,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본건 제품의 설치자나 시공자에 대해서, 설치 후의 보수 점검의 방법, 상품의 교환 시기, 고장시의 수리 방법, 수리하는 경우의 주의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본건에 대

해,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본건 온수기의 판매 당시에 본건과 같이 위험한 개조 시공을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곤란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러한 개조를 실시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은, 동종 사고 발생 후의 제 1심 피고 파로마의 태도를 가지고, 설명의무 위반, 정보제공의무 위반 등이 있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기 인정한 바와 같이, 제 1심 피고 파로마는, 1987년의 동종 사고 발생 후, 전국의 각 영업소에 대해, 파로마공업제의 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발생, 사고의 원인 및 대처방법을 연락, 통지해 주지 철저를 꾀하였다.

또, 파로마서비스, 파로마 제품 판매대리점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업자 외에, 일반의 가스기구 판매점, 수리업자들에 대해서도, 정기 혹은 수시의 강습회에의 참가를 호소하고 혹은 업자의 자주적인 연수회에 참가하여, 본건과 같은 개조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과 함께, 이것을 실시하지

않게 지도하고, 더욱이 감독관 청인 통산성, 사단법인 일본 가스석유기기공업회, 고압가스보안협회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동종 사고 발생 후에 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대해서도, 본건 사고는 제 1심 피고 파로마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이유로 하는 바는,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것들에 대한 판단은 앞에 나타난 바이지만, 그 외에, 동종 사고 발생 후에 취해야 할 의무로 주장한다, 즉시 본건 제품의 모두에 대해, 컨트롤박스를 교환해야 할 주의의무, 단자대의 합선개조가 되어있지 않은가를 점검·조사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인 가능성이 부족한 것 보고 안되어(1993년 당시 전국에 26만대 출하되었고(증언)), 전기 다. 의 대처 외에,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주장에 관한 나머지의 의무에 대해서도, 그것에 의해 본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의문이 있어, 채용할 수

없다.

(마) 또, 전기 경과로 보면, 본건 개조가 파로마서비스 사원에 의해 된 가능성이 전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점은 불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본건에 있어서, 제 1심 피고 호쿠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 1심 피고 파로마에 민법 71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제 1심 피고 호쿠넨

(가) 본건 사고 당시의 액석법·동법규칙에는, 제 1심 피고 호쿠넨이 주장하는 대로의 규정이 존재하는 바, 제 1심 피고 호쿠넨이 동법상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것, 제 1심 피고 호쿠넨이 액석법·동법 규칙에 근거해 가스기구의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전기 인정으로부터 분명하다. 그리고,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본건 온수기에 대해 2년마다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던 것 외, 1992년 2월 27일, A가 본건 주택을 임차할 때에도, 공급 개시시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기(이 시점에서, 이미 본건 개조가 되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 늦어도

1992년 2월 27일 시점에서, 액석법규칙으로 정하는, 배기팬에는 이것이 정지했을 경우에 연소기로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점검·조사의무가 있었다고 해야 한다.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본건 온수기는 배기팬이 온수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팬이 배기통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내장되어 있어도 배기통에 접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갑 13, 을 나1), 그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전기 사실로부터,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제 1심 피고 Y의 연락, 의뢰, 혹은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거실의 가스기구의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의뢰자로서는, 어쨌든 가스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점검·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며, 제 1심 피고 호쿠넨으로서도, 의뢰자가 그 의미에서의 안전확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에 응하

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이상, 제 1심 피고 호쿠넨으로서, (이것을 계약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별도로 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기에 이른 사람으로서 각 의뢰자에 대한 신의칙 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해야 할 점검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온수기의 배기통에 접속되는 배기팬이 정지했을 경우에 연소기로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고 있는지의 점검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있어서는, 그 점검방법으로서 정전 상태로 하는 것, 즉 온수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로부터 뽑아낸다고 하는 지극히 용이한 방법에 의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라)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본건 개조에 대해, 온수기의 구조나 전기회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그 원인을 발견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을 다62, 63의 각 1, 2)도 존재하는 바, 확실히, 본건의 경우, 1992년 2월 27일 시점에서, 본건 컨트롤박스를 열어 위험한 개조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닌가의 점검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다고는 반드시 인정하기 어려운 바이다. 그러나, 온수기의 구조나 전기회로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본건 온수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전기 실시한 바와 같기 때문에(이 점이야말로, 점검의 중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그 방법에 대해 지식이 없었다고 해도, 액석법규칙에 정해진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스스로 습득해야 할 것이며, 그 지식이 없는 것을 면책의 이유로 할 수 없다. 덧붙여서, 제 1심 피고 파로마가 1981년 무렵 수리업자용으로 작성 배부한 서비스 자료(을 나6)에도, 수리 후의 점검항목으로 상기의 방법에 따르는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 의미에서, 이것을 게을리한 제 1심 피고 호쿠

넨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 따라서,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본건 사고에 의해 입은 A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재 1심 피고 호쿠에이 등

(가) 제 1심 피고 호쿠에이 테크노는, 본건 온수기를 설치한 것이지만, 설치 당시에 본건 온수기의 강제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본건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 후, 제 1심 피고 호쿠에이 테크노가 본건 개조에 관여하거나, 혹은 본건 개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나) 제 1심 피고 호쿠에이·마이리가 본건 온수기의 설치와 수리 점검에 관계한 것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제 1심 피고 호쿠에이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제 1심 피고 Y

(가) 제 1심 피고 Y는, 본건 주택을 A에게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론으로서 A에 대해 임대한 본건 주택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제 1심 피고 Y도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 건물에 설치한 가스 온수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기술적,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아마추어 생각으로 단지 사용 기간의 장단에 의해 교환해야 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문적인 가스기구의 보수·수리 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 그 기구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을 것 같은 경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 온수기 등의 소비설비의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소비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본건 사고 당시의 액석법, 36조 2항)은 등급별, 그렇지 않은 한, 사용기간이 길어졌다고 하

여, 당연히 가스기구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제 1심 피고 호쿠넨의 점검이 불충분한 것을 인식하는지, 본건 아파트의 가스기구가 액석법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상의 적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가 바뀐 것을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연락하여, 제 1심 피고 호쿠넨에게 점검·조사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제 1심 피고 Y가, 입주자가 바뀌는 때마다,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연락해 점검을 의뢰하고 있고, 본건 주택을 A에 임대할 때에도,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연락하여, 점검·조사 받도록 한 것은 전기 인정한 바와 같다.

그 밖에, 본건에 대해, 제 1심 피고 호쿠넨의 점검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제 1심 피고 Y에게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다) 또, 제 1심 원고 승계인들

은, A가 본건 거실에 입주 직후부터, 두통이 났는데, 그 원인이 가스기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여, 제 1심 피고 Y에 점검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I의 증언 중에는 이것에 따르는 진술 부분이 있지만, 제 1심 피고 Y본인 심문의 결과와 대비하여, 채용할 수 없고, 달리 동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라) 또, 본건 온수기의 보수 관리와의 관계에서, 제 1심 피고 호쿠넨을 제 1심 피고 Y의 이행 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원래 의문이 있는 바이나, 만일 이것을 긍정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도,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그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본건에 대해 제 1심 피고 Y가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점검을 의뢰했던 것에 대해, 그 선임·감독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할 사정은 찾아내기 어렵다.

(마) 본건 온수기는 토지의 공작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 1심 피고 Y가, 민법 717조의

책임을 지는 근거는 없다.

(바) 따라서,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제 1심 피고 Y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6. 법원의 판결 주문

(1) 손해 및 상속

(가) 장의 비용 100만엔

A의 장례비용은, 100만엔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나) A의 일실회익 3301만 8136엔

① A의 1991년도의 연수입은, 388만 0606엔이라고 인정된다(갑 8).

② A는, 본건 사고 당시, 28세이었기 때문에, 67세가 될 때까지 39년간,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③ 중간이자 공제 라이프니츠 계수 17 · 017

④ 생활비 공제는, 50퍼센트가 상당하다.

⑤ A의 일실회익은, 다음의 계산식과 같이, 3301만 8136엔이다.

$$\text{계산식 } 3,880,606 \times 17.017 \times (1-0.5) = 33,018,136$$

(다) 위자료 1800만엔

본건 사고의 원인 및 그 결과,



A의 연령, 그 외 본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A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는 1800만엔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라) (가) 내지 (다)의 합계액 5201만 8136엔

(마) 상속

갑 4, 5, 소송절차 수계신청서 첨부 각 호적등본, 각 제적등본, 개제원 호적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A의 상속에 관하여,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이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변호사 비용 500만엔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이 본건 소송의 제기, 수행을 제 1심 원고 승계인들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은 당재판소에 현저한 바, 본건 사안의 내용, 심리 경위 및 인용액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본건 소송 수행에 필요로 한 변호사 비용은,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에게(법정상속분의 비율로) 500만엔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 이상의 합계는 5701만

8136엔이 되고, 제 1심 원고 승계인 XI에 대해 2분의 1인 2850만 9068엔, 제 1심 원고 승계인 X2, 동X3 및 동X4에 대해 각 6분의 1인 950만 3022엔의 각 손해배상을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2) 따라서, 원판결 중,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고, 그 나머지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대로 판결한다.

주문

1.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항소에 기하여, 원판결 중, 주식회사 호쿠넨(이하 「제 1심 피고 호쿠넨」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제 1심 원고 승계인 XI에 대해, 2850만9068엔 및 이에 대한 1992년(平成4년) 4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제 1심 피고 호쿠넨은, 제

1심 원고 승계인 X2, 동X3 및 동X4에 대해, 각 950만 3022엔 및 이에 대한 1992년(平成4년) 4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3)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제 1심 피고 호쿠넨에 대한 그 나머지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그 나머지의 항소 및 제 1심 피고 호쿠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해서, 제 1심 원고 승계인들과 제 1심 피고 호쿠넨과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이것을 8등분하여, 그 3을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제 1심 피고 호쿠넨의 부담으로 하며, 제 1심 원고 승계인들과 그 나머지의 제 1심 피고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전부 제 1심 원고 승계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1)(2)에 한 정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